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24명

2. 제안이유

-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장의 의무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3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 부서검토: 예산재정과 의견제출
- 기 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집행기관의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규정한 것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구분하여 더욱 명확하게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부서장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예비비 지출 보고’ 조항과 ‘시장의 의무’ 조항을 통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기관의 신중한 판단과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비비 지출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